



2024학년도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전문학사 취득과정

# 중소기업 계약학과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요강

- 스마트생산물류공학과 -



(우)35408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복수동) 중소기업 계약학과  
TEL) 042-580-6183 FAX) 042-580-6188 <https://spl.dst.ac.kr>

## 목 차

I. 전형일정 .....	1
II. 원서접수 안내 .....	2
III. 모집학과 및 인원 .....	2
IV. 지원자격 .....	2
V.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4
VI. 지원자 유의사항 .....	6
VII. 등록금 지원내역 .....	7
VIII. 문의 및 연락처 .....	8

## I.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 접수	정시	2024.05.20.(월) 09:00부터 2024.07.12.(금) 18:00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앙도서관 2층 평생교육원)			
	추가	2024.07.15.(월) 09:00부터 학기개시일 전까지			결원 발생시	
첨부 서류 제출	정시	2024.05.20.(월) 09:00부터 2024.07.12.(금) 18:00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앙도서관 2층 평생교육원)		
	추가	2024.07.15.(월) 09:00부터 학기개시일 전까지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 표	정시	2024.07.19.(금) 13:00			추후 공지	개별통보 (발표일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추가	학기 개시일 전 (추후 공지)				
등록금 납 부	정시	2024.08.19.(월) ~ 23.(금)	추후 공지			은행 수납 및 인터넷 banking
	추가	학기 개시일 전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함

## II. 원서접수 안내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접수	(정시) 2024.05.20.(월) 09:00부터 2024.07.12.(금) 18:00까지 (추가) 2024.07.15.(월) 09:00부터 학기개시일 전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앙도서관 2층 평생교육원)

## III. 모집학과 및 인원

학부	학과명	수업형태	학위	모집인원	비고
첨단공학부	스마트생산물류공학과	야간	전문학사	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교육형</li> <li>• 재교육형(동시채용)</li> </ul>

※ 본 학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학과로서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임.

- 재교육형: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수료 또는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 과정에 참여하는 자
- 재교육형(동시채용형):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개시일(9월 1일) 전까지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자(과거 해당 기업의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함)

## IV. 지원자격

### 1. 지원자격 대상

-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재교육형 :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학기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근무 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함
  -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 원서접수 개시일부터 학기개시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학기 개시와 동시에 근로자 신분이면서 학생 신분을 갖는 자(다만, 신입생 모집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 동시채용에 참여할 수 있음)

- 나.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정한 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 계약 산업체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된 자
- 다. 「중소기업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게임링 및 베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포함
- 마. 학위 과정의 교육 내용과 소속 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관련성이 있는 자

## 2. 우선선발 및 선발불가

### ※ 우선선발

- 가. 전문학사학위는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 나.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자
- 다.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라.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마.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바.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차.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카.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선발불가

- 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나.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다.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라.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외부회

- 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창업기업은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다.)
- 마.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 바.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V.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1. 전형방법

- 서류전형(지원자 심사)으로 선발 (모집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장기 재직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
- ※ 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더라도 학위과정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2. 원서접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입학원서 1부	✓ 본 대학 지정양식 ※ 첨부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부 <서식 1>
2. 최종학력(졸업, 졸업예정, 수료)증명서 1부	✓ 해당학교, 정부24,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3. 최종학력성적(전학년)증명서 1부	✓ 해당학교, 정부24,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록) 1부	✓ 해당기관, 정부24 (병역사항 기록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개명자는 변경 내용 명시된 것)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참여학생명)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
6. 현재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기관
7. 등록금 지원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 1부	✓ 해당기관
8.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재교육형 : 【별지 제6호 서식】 * 재교육형(동시채용) : 【별지 제7호 서식】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1부(sminfo.smba.go.kr) 3. 중견기업 확인서 1부(www.mme.or.kr) 4.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상시근로자가 명시된 서류) 1부(www.nhis.or.kr)

9.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insure.or.kr 개인 회원 로그인 후 발급)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www.hometax.go.kr) (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10.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3부 * 재교육형 : 【별지 제10호 서식】 * 재교육형(동시채용) : 【별지 제11호 서식】	※ 첨부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붙임】
11. 「중소기업 계약학과」 근로계약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붙임】	✓ 재교육형(동시채용) 지원자에 해당
12.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1부 <서식 11>	※ 첨부 1.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www.hometax.go.kr) 2. 국세납세증명서 1부(www.hometax.go.kr)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www.gov.kr)

※ 본교 및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요청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전형에서 제외됨

※ 모든 입학원서접수서류 양식은 스마트생산물류공학과(<http://spl.dst.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3. 합격 후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보증보험증권 1부	서울보증보험 매학기 제출.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1조(등록금의 부담 등)에 관련하여 제출

### 4. 재학 중 및 졸업 후 의무기간 재직확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insure.or.kr 개인 회원 로그인 후 발급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www.hometax.go.kr
4.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해당)	sminfo.smba.go.kr 재학중 해당
5.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 해당)	www.mme.or.kr 재학중 해당
6.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중견기업 해당)	www.hometax.go.kr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4조(참여학생의 재직확인 등)에 관련하여 제출

## VI. 지원자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유의사항

- 가. 접수가 완료되어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작성내용 수정 및 원서접수 취소가 절대 불가하므로 제출하기 전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 나. 서류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임
- 다. 원서접수 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042-580-6183)**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형기간 중 지원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락이 안 될 경우는 지원자 책임임
- 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 재학 중이라도 이를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며 응시자격을 제한함

### 2. 합격자 유의사항

- 가. 합격자에 대한 모든 공지사항은 개별 통보함
- 나.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 처리하고 예비 합격(후보)자로 총원함
- 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격 부적격으로 인한 경우에는 전형결과에 관계없이 취소됨**
- 라. 학위과정 도중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이나 자퇴할 경우와 졸업(수료 및 학위취득)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재교육형:1년,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2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환수 조치함(단, 폐업,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 **【별표 제1호~3호】**
- 마. 참여 학생은 학기 개시일부터 의무근무 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제출**해야 하며, 등록금 납부 후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1조(등록금의 부담 등)와 관련해 보증보험증권 기간 내 미 가입 또는 가입거부 할 경우 합격 취소됨
- 바. 모집요강에 없는 사항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름



### 3. 추가합격자 유의사항

- 가. 등록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부족할 경우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음
- 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형 성적순으로 합격 통지할 예정이며, 본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함
  - ※ 본교에서 지정한 등록기간 이후의 등록은 불가하니 해당 등록기간에 필히 등록
- 다. 입학원서상 연락처 오류기재, 연락두절 등에 의하여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순위자로 총원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주소, 전화, 이메일 변경 시 본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042-580-6183)로 연락)

## VII. 등록금 지원내역

2024학년도 기준 1인당 등록금 : 2,300,000원

- 가.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 전액지원
- 나. 재교육형

제출서류		정부지원	참여기업	참여학생	비고
중소기업		등록금의 85%	등록금의 7.5%이상	등록금의 7.5%이하	
중견 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록금의 40%	등록금의 30%이상	등록금의 30%이하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없음	등록금의 50%이상	등록금의 50%이하	

※ 상기 금액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준등록금 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 지원 우대사항(정부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증빙자료 제출

-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 10% 상향
-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 5% 상향
-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 5% 상향
-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 5% 상향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상향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상향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상향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5% 상향

## Ⅷ. 문의 및 연락처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스마트생산물류공학과)

□ 연 락 처 : 042)580-6183

□ 팩 스 : 042)580-6188

□ 홈페이지 : <https://spl.dst.ac.kr>

□ 메 일 : [atsmart@dst.ac.kr](mailto:atsmart@dst.ac.kr)

□ 주 소 : (35408)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앙도서관 2층 평생교육원)

# DST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원서

모집학년도	2024학년도	<input type="checkbox"/> 봄학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을학기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해당란 기재)	고등학교 년 졸업(예정)	검정고시 년 월 일 합격	대학교 년 졸업(예정)
자택주소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		
본인연락처	E-mail		
지원학과	스마트생산물류공학과(야간)	지원유형 (√표시)	<input type="checkbox"/> 재교육형 <input type="checkbox"/> 재교육형(동시채용)
산업체(기관)명	전화번호		( ) -
산업체(기관)주소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		
담당부서	담당직무		
현직장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 2024년 8월 31일까지(총 년 월 일) ※ 직장건강보험의 자격취득일(가입일)과 동일하게 작성		
경력사항	산업체(기관)명①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산업체(기관)명②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4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접수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서명)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수험번호

※ 수험생은 기재하지 마시오

## ※ 유의사항

- 제출서류 : ① 최종학력(졸업, 졸업예정, 수료)증명서 ② 최종학력성적증명서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록)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학생명) ⑤ 현재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⑥ 등록금지원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휴학은 불가하며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될 수 있음
- 재직기간 및 재직사실에 대한 내용이 증빙(첨부)서류와 다를 경우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기준으로 적용함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성 명		생 년 월 일	
지 원 학 과	스마트생산물류 공 학 과	연 락 처	
근 무 부 서		재 직 기 간 ( 개 월 )	년 월 일 ~ 현재 ( )
직 위		담 당 업 무	
<p>&lt;추천사유&gt;</p> <p><input type="checkbox"/> 교육과정과 추천대상자의 직무 간 상호 연관성(현재 또는 향후)</p> <p><input type="checkbox"/> 학위과정 수료이후 추천대상자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p> <p><input type="checkbox"/> 기타 위 사람을 추천한 특별한 사유</p>			
<p>위 사람을 2024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 계약학과」 입학희망자로 추천합니다.</p> <p>※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a href="http://4insure.or.kr">4insure.or.kr</a>에서 발급)  3.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가능)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자 : (인)</p> <p>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p>			



#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 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은 아래 등록금 부담비율에 따라 산출된 등록금 부담금액을 “주관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 부담비율 (100%)	정부보조비율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 부담비율	참여학생 부담비율
	85%	7.5%	7.5%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1년 이상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1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학위과정지원)**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학위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학위과정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지의무)**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학생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 반환)**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붙임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 장 이 효 인	(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명)
“참여학생”                    ○ ○ ○ (주)		○ ○ ○ (서    명)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과 관련한 학생선발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 소속, E-mail, 직위, 휴대전화, 학력)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협약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식별정보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이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지침 준수)**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3조(채용의무)** ① “참여기업 대표”는 “참여학생”이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학기 개시일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참여학생”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제시한 고용조건을 과도하게 변경할 경우 “참여학생”은 “주관대학의 장”에게 3자 계약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대학의 장”은 제2항의 해약 요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해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의무근무)** “참여학생”은 졸업일로부터 최소 2년 간 “참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근무 기간은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 간 협의에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참여학생”의 졸업 후 의무근무 기간 : 2년

**제5조(지도·감독)** “주관대학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학과를 운영해야 하며, “참여학생”이 원활히 학과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등록금의 반환 등)** “참여학생”은 자퇴, 제적, 퇴사 등으로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7조(상호협력)**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및 “참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산업교육 추진 및 산학협력 촉진
- 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추진 및 참여
- 다.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라.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마. 교육용 실험실습 시설의 공동 활용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
- 바.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사.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아. 기타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관련 사항

**제8조(비밀유지)**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 “참여학생”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주관대학의 장”과 “참여기업 대표”와 “참여학생”이 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참여학생”의 의무근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

20    년    월    일

- 붙임 :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2. 중소기업계약학과 근로계약서 1부.

“주관대학의 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 장 이 효 인	(서    명)
“참여기업 대표”        ○ ○ ○ (주)	대 표        ○ ○ ○	(서    명)
“참여학생”            ○ ○ ○ (주)		○ ○ ○ (서    명)



### 기업(신용)정보 관련 서약서

○ 당사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상태인가?  
(징수유예는 제외)

( 예, 아니오 )

2. 신청일 현재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예, 아니오 )

3. 신청일 현재 파산, 워크아웃, 기업 및 대표(이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예, 아니오 )

- ※ 첨부 1.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2. 국세납세증명서 1부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www.gov.kr](http://www.gov.kr))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표 제1호】

## 참여학생의 근무 및 학업상황 변동에 따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보 조 금 환 수
부적격 입학·재학	①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하여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학위과정 중에 채용약정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재직할 경우	○
퇴직·포기	②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폐업,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에서 퇴직한 경우	×
	③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기간 내에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기업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
	④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내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
	⑤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 내에 본인 귀책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경우	○
	⑥ 채용조건형 참여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참여기업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자 퇴	⑦ 학위과정 도중에 본인의 원에 의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⑧ 학위과정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학 업 태 도	⑨ 정당한 사유 없이 학과수업에 무단 불참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학업태도를 보이는 경우	○
	⑩ 휴학 중인 자가 정해진 기한 내 복학하지 않은 경우	○
	⑪ 참여기업 또는 참여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자격요건 변동	⑫ 참여학생이 재학 중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된 경우	×
	⑬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이 된 경우	×
	⑭ 재학 중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	×

-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주관대학과 관리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 위 처리기준 중 ①의 경우, 부적격 입학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해야 함
- ⓒ 위 처리기준 중 ②·③ 재학생의 경우, 희망한다면 학생 신분 유지 가능. 이때 학업은 자부담으로 이수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 3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수 가능.
- ⓓ 위 처리기준 중 ⑫·⑬의 경우, 해당 교육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 학생 신분 유지 가능, 2분의 1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 학업 중지
- ⓔ 위 처리기준 중 ⑭의 경우, 중견기업 적용시점부터 중견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 지급(다만, 적용시점이 학기 중인 경우 향후 시작되는 학기부터 적용)



【별표 제2호】

## 최소 의무근무기간 중 정부보조금 반환 기준

구 분	정부보조금 반환 금액
재교육형	<input type="checkbox"/>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365일)
채용조건형	<input type="checkbox"/> 등록금 중 정부보조금 전액 × (1 - 재직일수/730일)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 재직일수 산정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년월일 - 의무근무 시작일 (졸업일 익일 기준)

【별표 제3호】

## 학기 중 민간부담금 및 정부보조금 반환 기준

구분	반환경로	반납 사유 발생일	반납 금액
민간 부담금	주관대학 ↓ 기업/학생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민간부담금의 6분의 5 해당액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민간부담금의 3분의 2 해당액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민간부담금의 2분의 1 해당액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input type="checkbox"/> 반환하지 않음
정부 보조금	학생 ↓ 주관대학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정부보조금의 6분의 1 해당액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정부보조금의 3분의 1 해당액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정부보조금의 2분의 1 해당액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input type="checkbox"/> 정부보조금 전액
	주관대학 ↓ 전담기관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정부보조금 전액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input type="checkbox"/> 학기개시일에서 90일 지난날	